

경력경쟁채용등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임용예정계급 직무분야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외무공무원			외무 9등급	외무 6~8등급	외무 5등급	외무 4등급	외무 3등급	외무 2등급	외무 1등급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포함)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초·중·고 등학교교원 및 기타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 11 적용대상자		24호봉 이상	16호봉 이상	12호봉 이상	11호봉 이하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 12 적용대상자		17호봉 이상	11호봉 이상	7호봉 이상	6호봉 이하		
관사·검사			5호봉 이상	2호봉 이상					
관련 직무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12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자			10년 또는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			6년	3년		

- 비고 1.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및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자의 경우에는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다.
2.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3.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기능직 경력을 가진 사람의 경우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산정 시 기능6급은 6급으로, 기능7급은 7급으로, 기능8급은 8급으로, 기능9급은 9급으로 본다.